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 의 자 : 이해민 · 황운하 · 박은정
서영석 · 서왕진 · 박성준
김한규 · 조인철 · 손명수
양문석 · 이재관 · 김승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,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,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

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
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해당”을 “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다만, 미성년자(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삭제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게재자”라 한다)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정보게재자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

등 제3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

다만,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정보게재자가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.

제44조의3제2항 중 “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”을 “제44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	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“삭제등”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게재자”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<신 설>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후단 삭제> 다만, 미성년자(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삭제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게재자”라 한다)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요

②·③ (생략)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“임시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<단서 신설>

<신설>

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정보게재자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3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

-----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-----

-----. <후단 삭제> 다만,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정보게재자가 제5항에 따른 임

⑤ (생략)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 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.	<u>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.</u> 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제3항----- ----- -----. 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제44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----- -----.
---	--